
**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결 등을 위한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추진계획**

2017. 3.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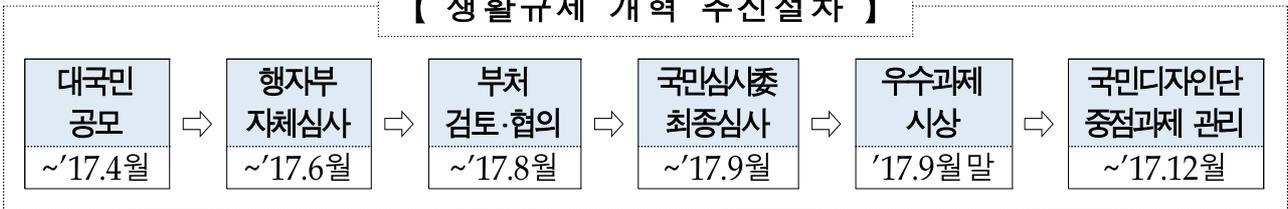
추진 개요

- 규제개혁의 범위를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생활 속 불편 등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체감 성과 제고
-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

2

추진 방안

【 생활규제 개혁 추진절차 】



1 대국민 과제 공모

- (공모 방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일괄 접수*
 - * (공모 기간) '17.3.15~4.14. / (접수 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만, 주민 편의를 고려해 지자체의 대리접수 및 일괄제출 허용
- (공모 내용)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별 과제 예시('16년 추진과제) 》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 냉동차량 화물운송업 허가요건 완화 ▸ 장기휴업에 따른 공중위생교육 유예 허용
생애주기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재배정절차 원스톱 처리 허용 ▸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온라인 제출 허용
생활불편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관행 정상화 ▸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② 공모과제 심사 및 우수과제 선정

- (심사 절차) 행정자치부 자체심사 이후 외부위원 최종심사 실시
 - ① 자체심사 : 非규제* 제외 및 부처 의견을 반영해 100여건 선정
 - *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성 과제,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관련 건의 등
 - ② 최종심사 :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5건 내외 선정
 - * 국민 생활 불편 해소라는 취지를 고려해 규제분야 전문가 외에 우리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10~15명)

✓ 행자부 자체심사를 거친 과제 중 **참신성·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과제내용 보완 또는 적극적 대안 제시** 병행

- (최종심사 기준) 과제 내용의 참신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③ 우수과제 인센티브 및 사후 관리

- (우수과제 시상) 과제 건의자와 소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행자부장관상 및 시상금 수여

구분	시상 내역	인원(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우수과제 사후 관리) 우수과제 중 일부(3~5건)에 국민디자인단*을 도입해 개선 세부방안 마련 및 시행 단계까지 적극관리(조직실 협업)
 - * 정책 설계-시행-환류 쉼 단계에 국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방식

-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대국민 공모 실시('17.3.15.~4.14.)

【 공모 홍보계획 】

- ① 보도자료 배포(3.15.) 및 행자부·지자체 SNS 등 온라인 홍보 병행
- ② 공모 포스터 제작 및 주요 대학·관청 내 게시
- ③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정책고객 대상 참여 독려 협조요청
- 지자체의 경우 해당 관할구역 내 공모건수를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 행정자치부 자체심사 및 부처 협의·조정 시행(~'17.8월)
 - 공모과제 보완 및 대안제시를 위한 부처합동 조정회의 수시개최
- 생활규제 국민심사위원회 구성(~'17.8월) 및 최종심사 완료(~'17.9월)
- 「생활규제 개혁을 위한 국민 공감 콘서트」 개최(~'17.9월말)
 - 과제 공모자, 소관부처·지자체 공무원 합동으로 우수 공모과제 및 개선 방안을 스토리텔링의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
- 중점과제(3~5건) 대상 국민디자인단 도입 및 지속관리(~'17.12월)

참고1

2016년도 대비 달라지는 추진 방식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변경 이유
공모방식	시·도 및 행정자치부 합동 접수	행정자치부 일괄 접수	대국민 참여 확대
내부심사	시도 1차심사 후 행자부 2차심사	행정자치부 자체심사	심사 공정성 제고
부처협의	소관부처 검토의견 이견없이 수용	조정회의를 통해 과제보완 및 대안제시	생활규제 개혁의 체감성과 제고
국민심사 위원회	일반국민만으로 구성	일반국민 위주 구성, 전문가 일부 참여	심사 전문성 제고
우수과제 인센티브	행자부장관상 +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행자부장관상 + 시상금 대폭 확대 (10만원~100만원 차등)	대국민 참여 확대
우수과제 사후관리	해결과제 대상 부처 제도개선 여부 단순 점검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국민디자인단을 도입, 제도 개선·시행까지 적극참여	생활규제 개혁의 실효성 제고
지자체 협조도 평가	과제건수 상한 없이 일괄 반영 (①제출건수, ②행자부 자체심사 결과 반영건수, ③과제 최종해결 건수)	제출건수의 경우 50건 이상인 경우 만점 처리, 반영건수 비중 확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되, 행자부 자체심사에 통과된 과제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공모 과제 질 제고

행정자치부는 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건의, 생활 속 불편,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3.15.(수) ~ 4.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
 -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공모 방법

- 제출서식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 ①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우:03171) ※당일 소인분에 한함
 - ② 전자우편 : aiya4@korea.kr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참신성	유사 건의와의 차별성, 목적 달성 방식의 창의성 등	40
실현 가능성	공모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도,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

구분	시상 내역	인원 (중복 미포함)
최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5명
장려	행정자치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20명

※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

○ 발표일 : 2017.9월말

※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

□ **기 타**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02-2100-3734)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행정자치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7. 3.15.(수) ~ 2017. 4. 14.(금)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수과제 공모 가능)

● 공모과제

①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창업 활성화·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② 생애주기 분야 :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③ 생활불편 분야 :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분야·에시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는 모두 해당되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의 유사공모에서 채택된 사항 등은 제외

● 공모방법 : 이메일, 등기우편 2가지 중 선택

※ 제출서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공모 담당 (우 : 03171)

※ 우편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 aiya4@korea.kr

● 시상내역 :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2017. 9월 중 발표)

- 최우수 1(100만원), 우수 5(각 50만원), 장려 20(각 10만원)

※ 시상 규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과제가 중복접수일 경우 접수 순차순으로 3명만 시상

●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 02-2100-3734)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작성예시)	관리번호
	공란

제안자	성명	○○○	연락처 (전화번호)	010-0000-0000
	E-mail	abcd@hanmail.net	주소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까지만 작성

제 목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대납 관행 정상화

관련법령 주택법 제51조 및 주택관리법시행령 제66조제5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과(041-000-000) * 접수부서에서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주택법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여야 함

< 관련 조문(주택법 제51조) >

제5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자(세입자)인 경우, 주택을 장기적으로 수선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일괄 청구되고 있어, 우선 세입자들이 대납을 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예시) >

전기 379 k	57,510	일반관리비	43,439		
TV수선료	2,500	청소비	13,273		
승강기전기료	5,689	경비비	29,032	부가가치세	
공동전기료	37,762	소복비	667	소 계	115,287
소방열선전기		승강기유지비	4,710		
		수선유지비	9,373	합 계	231,140
소 계	103,461	보일러	1,665	이 달 합 계	
수도 15 t	9,150	생활폐기물수수	1,612	이 달 관리 비	
하수도료	3,240	장기수선충당금	9,990	이 달 관리 비	
관공수도료		신관위원운영비	825	합 계	231,140
수도료부과차		임주차대표회의	250	연 차 총 액	4,620
		위탁수수료	451	합 계	235,760
소 계	12,390	워드니스운영비		납 부 마 리 입	
				2018년 03월 31일	

<p style="text-align: center;">현황 및 문제점</p>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납할 경우 추후에 소유자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0.5.28 선고, 2009나95952판결)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략) 지연손해금 6,683,971원의 합계 6,780,820원과 원고가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 70,4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2009년 3월 관리비 190,000원을 공제한 6,661,220원의 지급을 구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판시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어, 공동주택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음 <p style="text-align: center;">< 관련 조문(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위의 조문은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대납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상당수 신규 세입자는 환급 청구방식을 잘 모르고 있으며,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반환 요구가 어려운 경우 다수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개선 방안</p>	<p><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여야 함 ○ 일괄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여 세입자가 대납 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편의 및 비용절감을 위한 책임 전가 행위임 ○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토록 규정함으로써, 세입자들이 별도의 청구 없이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함

